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57 발의연월일: 2020. 8. 6.

발 의 자:이용우·진성준·박홍근

홍기원 • 배진교 • 신정훈

박영순 · 정태호 · 최기상

문정복 · 김용민 · 유동수

이수진 · 강준현 · 홍정민

정필모 · 홍성국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·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만 제·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.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·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.

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·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·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제2항 신설).
- 나.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표준하도 급계약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 계약서의 제·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함(안 제3조의2제3항 신설).
- 다. 공정위가 하향식 방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·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함(안 제3조의2제5항 신설).
- 라.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의2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단체 등"이라 한다)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 - ② 사업자단체 등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하 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 - 1.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발

생한 경우
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·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·개정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

제3조의2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 성 및 사용)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을 권장할 수 있다.

개 정 아

제3조의2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 성 및 사용) ① 공정거래위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 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 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(이 하 이 조에서 "사업자단체 등" 이라 한다)에 표준하도급계약 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> ② 사업자단체 등은 건전한 하 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 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 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>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·개정 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

- 을 권고할 수 있다.
- 1.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 서 여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할필요가 발생한 경우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또는 개정할 수 있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 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들어야 한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·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⑦ 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의

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